

공정위, 전경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대한 입장 발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9월 21일(월) 공정위가 지난 5월 8일부터 6월 20일까지 5대 그룹 115개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7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하여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하여, 동 부당내부거래 조사과정 및 결과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정위는 계열사간 자금·자산·인력의 부당내부거래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다각화와 선단식 경영의 핵심수단이 되어 왔으며, 경쟁력 없는 한계계열기업을 부당하게 내부지원하여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에 자금과 자산을 지원하여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것으로 전경련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전경련의 보고서 및 이에 대한 공정위 입장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경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보고서 및 공정위의 입장 >

전경련 개선내용	공정위 검토의견
1. 조사의 취지 중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 촉진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음	▶ 우량계열사가 부실한 한계 계열기업에 대한 부당지원을 함으로써 우량계열사까지 동반부실화가 초래되어 국가경쟁력 약화 - 한계기업이 시장의 압력에 의해 퇴출하지 않고 오히려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 유지, 강화하는 것을 문제시하는 것이며, 공정위가 퇴출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아님
2.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 진술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한 점	▶ 공정위 심사 이전인 '98.7.4. 송부하고 3주후인 '98.7.23. 심결함으로써 충분한 소명 기회 부여
3. 부당지원행위는 법인세와 같이 정상가격의 30% 내외인 경우만 문제시해야 함 - 대여금의 경우 인정이자에 대해 법인세 세금을 부과하여 과징금과 중복 부담이 됨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자에 대하여 시가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인인 경우 30% 기준은 적용되지 않음 - 과징금은 법인세법상 손비인정이 안 되는 점을 고려하여 책정
4. 후순위채권은 영업용 순자본비율에 사입되어 계열사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제도와 조화되지 못함	▶ 후순위사채 발행제도를 계열사 지원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은 제도의 근본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임

전경련 개선내용	공정위 검토의견
	- 발행금리를 제3자도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정하게 책정했다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5. IMF 체제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체된 것을 지원으로 보는 것과 당좌차월금리를 정상가격으로 보는 점은 무리	▶ 선급금명목의 지원, 공사비 미회수는 IMF사태 이전에 발생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주장 ▶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한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당좌차월금리를 정상금리로 보는 것이 타당
6. 외국기업의 경우 본사 또는 계열사와 지원성 거래를 하고 있으나 이들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국내 대기업은 역차별을 받으며, 선진국에서는 공정거래법에서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경쟁제한행위만 규제함	▶ LG칼텍스가스 등 외국인이 합작투자한 기업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 선진국은 계열사의 독립경영체제가 확립되어 부실계열기업에 대한 부당내부지원의 소지가 없으며, 외국의 경우 부당지원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회사의 임직원은 배임죄에 해당

< 전경련의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의 주요 내용 >

[내부거래조사의 문제점]

◆ **조사의 취지**

- 부당내부거래 조사의 취지 중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퇴출을 통한 구조조정촉진은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음

◆ **조사방법과 절차**

- 임의진술에 날인을 강요한 점, 공정위의 조사보고서를 받은 후 진술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못한 점, 심결 이전에 지원성거래 규모를 밝힌 점 등은 절차상의 적법성 문제가 있음

◆ **판정기준**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의 판정기준이 법 제23조제1조제7호의 구성요건인 현저성, 지원성, 부당성을 구비하지 못함
- 계열사가 부모니면 다른 계열사도 적색거래처로 분류되고, 후순위채권은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준칙」에 따라 영업용 순자산 비율에 산입되어 계열사가 인수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제도와 조화되지 못함
- 계열사가 부모일 경우 그룹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되어 자금조달이나 영업에 차질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투자지분을 회수하거나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계열사나 거래업체의 CP 등을 인수해야 하는 거래관행과도 유리됨
- IMF 체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공사대금의 회수가 지체된 것을 지원으로 보는 것과 당좌차입금리를 정상 가격으로 보는 점 등을 법률해석상 무리가 있음

◆ **역차별 문제**

- 국내 진출한 외국기업은 본사 혹은 계열사와 지원성거래를 하나, 이들 기업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결과적으로 국내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게 됨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취지와 달리 대규모기업집단만 중점심사대상으로 지정함

◆ 다른 제도와의 중복

- 법인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제23조)과 중복되어 부담이 이중으로 늘어남

◆ 국제기준과의 비교

- 선진국은 일정 지분이 넘는 계열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보아 내부거래로 규제하지 않고, 효율성을 높이는 내부거래는 인정하며, 내부거래로 아끼될 수 있는 부작용은 주로 세법, 증권거래법 등으로 규제함.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내부거래를 금지하지 않고 그로 인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함

[개 선 과 제]

◆ 개선방향

- 내부거래규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부거래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이 규제영역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의 틀이 고쳐져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부당성 판단기준의 명료화, 시장개방으로 인한 역차별적 규제요소의 제거, 조사 및 심결 절차상의 적법성 확보 등이 따라야 할 것임

◆ 부당성 판단기준의 보완

- 『부당지원행위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구성요건에 따라서 금지대상을 부당한 지원행위의 유형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지원의도를 가지고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한 경우로 하는 등 현저성, 지원성, 부당성에 대한 기준을 보완하여야 함
- 세법문제는 이미 법인세법이 규제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침해나 소비자보호 문제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으로 이해관계자가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제한행위의 규제에 한정하여야 할 것임

◆ 역차별성의 해소

- 시장개방에 따라 경쟁제한적 행위만을 규제하고 외국기업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조사와 규제를 강화하며,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조항과 관련하여 대규모기업집단을 별도로 지정·관리하는 조항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대규모기업집단이 국내외에서 외국기업에 비해 차별을 받게 되는 요소를 조기에 해소하여야 함

◆ 절차의 적법성 확보

- 현장조사과정에서 임의진술에 대한 날인 강요의 금지, 요구하는 자료의 구체화, 조사보고서 송달시 충분한 소명시간의 부여 등으로 절차상의 위법요소를 해소하여야 함

◆ 기타

-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이 매출액의 2%인 것은 기업의 매출규모를 고려할 때 과다하므로 부과기준이나 절차의 명료화와 현실적합성을 위해 하향조정하여야 함

과징금부과 등 상기 공정위의 조치결과에 불복하여 5대 그룹이 모두 1차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대해 이의를 신청(SK(99), 삼성·현대(9.10), 대우·LG(9.11))함에 따라 공정위는 9

월 30일(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5대 그룹의 이의신청에 대한 심판을 하고, 10월 초에는 5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있다.